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2. 13.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발의일자 : 2018년 11월 13일
- 나. 발 의 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18년 11월 20일
- 라. 상정일자 : 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사회건설위원회(2018. 12. 1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14)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조례」에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조항 신설

○ 안 제6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인재)

○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존속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본 개정 조례안은 2014. 5. 2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을 통하여 동법 제9조제3항 신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동법 부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동 특별회계 조례의 존속기한이 2018. 12. 31로 만료됨으로써 존속기한 연장 및 상위법 관련 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동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57 호
----------	--------

제출연월일 : 2018.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연장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규정 신설
(안 제6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2018. 11. 1. ~ 11. 7. / 6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6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u>